

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최호정 의원입니다.

□ 지금부터 『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개정 촉구 건의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건의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
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1년 도시 확산 방지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후 50년 넘게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 해왔습니다.

□ 하지만, 도입 초기와 달리 경제발전과 산업의 고도화로

도시화가 진화되는 등 여건의 변화가 있음에도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경직된 규제는 분절적 도시관리계획을 낳았고, 주민들로부터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-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 해제는 국토교통부 ‘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·시·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’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상 위임행정규칙에 따르면 국토부는 20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, 100호 이상이 돼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반면 경기도는 20호를 적용해 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시킨 바 있습니다. 이에 서울시 경계의 인접한 지역은 소속 지자체가 어디냐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해제 여부가 결정돼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는 실정입니다.
- 또한, 집단취락지구 내 다가구 주택의 허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.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변화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수용하는 관리 기준의 수립도 필요합니다.
- 이에 본 촉구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,

주요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의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개정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의견수렴을 하고,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집단취락지구의 합리적인 개발제한관리 기준을 마련해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50년 이상 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가 키운 만성화된 부작용을 살피게 됐습니다.
- 집단취락지구 내 단독주택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고, 지자체마다 다른 해제기준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환경수자원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